보 안 규 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【목 적】

이 규정은 상공부 보안업무 취급요령(상공부 훈령 제101호), 국방부 훈령 제291호, 방위 산업 보안업무 시행규칙 제154조에 의거 회사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【 적용범위 】

이 규정은 회사에 종사하는 임원 및 사원에 대하여 적용된다.

제 3 조 【보안책임】

산업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 또는 자재를 직접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자와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.

제 2 장 보안관리체계

제 4 조 【보안업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】

- 1. 자체보안 업무계획의 수립, 통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 업무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- 2. 협의회 구성은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각 본부장을 위원으로 하며 보안담당관이 간사가 된다.
- 3. 보안담당관은 동 협의회 회의록의 기록유지 및 일반 서무를 관장한다.
- 4.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.
 - 1) 보안내규의 제정 및 그 개폐에 관한 사항
 - 2) 보안업무의 기본계획수립 및 제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
 - 3) 보안위반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
 - 4) 신원 특이자의 임용 및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
 - 5)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협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

제5조【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】

- 1. 회사의 전반적인 보안업무에 관하여 사장을 보좌하며 보안업무를 지휘, 조정, 통제, 감독 가능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임명한다.
- 2.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 - 1)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, 조정 및 감독
 - 2)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
 - 3) 비밀소유 현황 조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
 - 4) 자체 보안점검 및 보안진단
 - 5) 약호자재 등록 및 운용
 - 6) 산업정보에 대한 보안·관리
 - 7)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업무
 - 8)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6 조 【분임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】

- 1.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분임 보안담당관을 부서 장급으로 하여 임명할 수 있다.
- 2. 분임 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체 소관업무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1) 소관업무에 관한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시행
 - 2)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
 - 3) 비밀소유 현황 및 관리
 - 4) 비밀취급 인가증 및 인가자 관리
 - 5)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사항

제 7 조 【비밀 보관책임자 지정 및 임무 】

- 1. 분임 보안담당관은 비밀을 취급하는 당해 부서에서 업무상 비밀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과의 책임자를 비밀보관책임자 "정"으로 임명하고 "부" 책임자를 대리 및 사원으로 임명한다.
- 2. 과 및 분야별 업무가 상이할시 과 또는 분야별 "부" 책임자를 둘 수 있다.
- 3. 보관책임자는 "부" 책임자를 지휘, 감독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 - 1)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
 - 2) 비밀의 도난, 누설,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.
 - 3) 비밀관리기록부, 비밀열람기록전 및 비밀대출부 등을 기록 유지한다.

제 8 조 【 비밀취급 】

- 1. 비밀문서는 보관책임자 단위로 관리기록부를 작성·보관·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업무의 폭주 및 과별 업무구분 및 보안을 위하여 과별 관리기록부를 분리하여 관리할수 있다.
- 3. 비밀문서는 생산 및 접수 즉시 관리 기록부에 등재 후 취급하여야 한다.

제 9 조 【 비밀수발 】

- 1. 비밀수발은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직접 접촉에 의하여야 하나 대외 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에 의하되 긴급을 요할 시는 소관부서에서 직접 발송할 수 있다.
- 2. 회사 문서수발 담당자(II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함)는 비밀문서 수발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하되 대외 접수 비밀은 관련 업무부서로 직접 이관하며, 기타사항은 보안 담당관의 통제에 따른다.

제10조【비밀보호시설 및 장비확보】

- 1. 비밀의 안전보관 및 관련자 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담당관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 - 1) 비밀합동보관소
 - 2) 비밀발간실
 - 3) 비밀보관용기(파괴나 휴대가 용이하지 않은 금고 또는 이중 철재 캐비넷)
 - 4) 세절기

제11조【비밀보관소 및 장비의 보호와 운영대책】

- 1. 비밀합동보관소의 운영은 일과 개시 시간으로부터 일과 종료시간까지로 한다.
- 2. 비밀보관소의 출입인원은 II급비밀 취급인가자로서 제한하며 출입한계는 다음과 같다.
 - 1) 보안담당관 및 관리책임관
 - 2) 비밀보관 부서의 보관책임관(정·부)

- 3. 보안담당관 및 각 분임 보안담당관실 단위로 비밀보관소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비밀보관소에 비밀을 보관하되 일과 종료 후에는 일체 일반사무실에 보관할 수 없다. 다만, 업무로 인해 지출승인서에 의거 지출시는 예외로 한다.
- 4. 합동보관소에 보관되어야 할 비밀은 다음과 같다.
 - 1) 생산·접수된 비밀문서
 - 2) 비밀 설계도면(원도, 출도 도면 포함)
 - 3) 음어 및 약호자재
 - 4) 비밀괘도, 사진, 필름과 슬라이드
 - 5) 생산, 기안중인 비밀과 초안, 기안문
 - 6) 기타 기밀사항
- 5. 합동보관소에는 비밀문서 및 자재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비치물 이외는 일체 보관할 수 없다.
- 6. 비상지출 용기는 합동보관소 내의 비밀보관용기 수와 비밀의 보유 정도에 따라 보관 부서 단위로 비밀지출 운반대 등의 용기를 1개 이상 준비하여 보관용기 상단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7. 합동보관소에는 출입자 명부, 비밀대출부를 비치 정리한다.
 - 1) 합동보관소 내에는 다음과 같은 현황을 작성 유지한다.
 - (1) 보관책임관 정·부 현황

구분 부서	보관책임관(정)		보관책임관(부)		
	직위	성명	직위	성	

- (2)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계획
 - 가. 지출 및 파기조의 편성과 임무
 - 나. 지출 및 파기시기
 - 다. 지출경로와 운반수단 지출장소

제12조【비밀보관용 자물쇠 통제대책】

- 1. 비밀합동 보관소 및 비밀보관용기의 열쇠 및 다이얼 번호는 각각 2개가 있어야 하며 그 중 1개는 보관책임관이 보관하고 1개는 보안담당관이 밀봉하여 보관한다.
- 2. 공휴일 및 일과 후에 비밀의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를 위하여 당직근무 책임자에게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서와 보안담당관이 밀봉하여 보관하는 열쇠 또는 다이 얼번호를 매일 교부하여야 한다.
- 3. 당직 책임자는 밀봉 교부받은 열쇠 또는 다이얼 번호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개봉하였을 때는 익일 보안담당관에게 개봉사유와 개봉 후의 보안대책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담 당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4. 밀봉 봉투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

비밀합동 보관소 열쇠

봉투를 개봉하였을 시는 보안담당관에게 익일 개봉사유서와 개봉 후의 보안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【비밀생산 통제 및 생산시 보호조치】

- 1. 비밀의 원문생산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회사시설 또는 관련 정부시설 및 인가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다.
- 2. 생산부수는 최소한으로 하며, 회사 내에는 1부로서 열람으로 대치하며 예비부수는 3부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.
- 3. 보안성 검토를 받을 시 배부처의 적절성을 통제받는다.
- 4.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1) 관련 없는 인원의 접근방지와 출입자 통제대책
 - 2) 비밀분류가 확정되지 아니한 기안문서, 군수물자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.
 - 3) 비밀 생산시에 사용된 기안지나 필경지의 자재 및 자료는 세절기를 이용 그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.
- 5. 각 부서별로 비밀을 생산 및 취급할 수 있는 보안대책이 강구된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14조 【비밀세부 분류지침】

- 1. 지침에서 결정된 비밀등급은 최저 등급으로 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완성된 사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지엽적인 사안은 내용에 따라 보다 하위등급 또는 일반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.
- 2. 지침에 수록되지 않는 사항은 가장 적합 또는 관련된 내용에 준하여 분류한다.
- 3.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등급 이하의 비밀에 대한 분류전을 가지며 공문기안 자가 해당 비밀에 대한 분류를 할 때에는 분임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분임 보안담당관이 해당 부서의 부서장을 겸무한 경우 서류 결재로써 통제를 받은 것으로 한다.
- 4. 비밀분류지침은 [별첨 1] 과 같다.

제15조【폐휴지 처리 및 문서 이관시 보안성 검토】

- 1. 파기일자가 도래한 비밀 또는 비밀내용이 포함된 폐지 및 휴지는 반드시 파기하여야 한다.
- 2. 타자용 리본 및 먹지는 3회 이상 사용할 때까지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.
- 3.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는 부서내에 세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4. 비밀문건의 파기는 예고문 일자 당일 18:00(토요일 12:00)에 보관책임관 "정"의 입회하에 보관책임관 "부"가 세절기에 의해 파기를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 파기 사실을 날인하여야 한다.
- 5. 보관책임자는 매일 18:00(토요일 12:00)시를 기준, 해당 부서의 휴지 및 폐지를 수거하여 세단처리하여야 한다.
- 6. 당직 근무자는 각 부서의 폐지 및 휴지의 잔량 여부를 점검 확인한다.
- 7. 비밀문서 및 폐지와 휴지를 파기하는 자는 그 원형이 완전히 세단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8. 회사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중 산업정밀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발간 전에 보안담당관의 보안성 유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.

제16조 【비밀의 인수인계】

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 보관책임관이 변경되어 비밀의 인수 인계시 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최종 기록된 난 밑에 비밀건수와 일자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

고 입회자가 최종 서명날인한 후 비밀문서 및 자재와 함께 인계인수한다.

제17조 【비밀문건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】

- 1.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시기는 다음과 같다.
 - 1) 화재 비상시
 - 2) 천재지변 및 폭동 사태시
 - 3) 전 시
- 2. 시행책임

	일 과 중	일 과 후(공퓨일 포함)
화 재 비 상 시	관리 및 보관책임관	당직근무자
천재지변 및 폭동사태시	관리 및 보관책임관	당직근무자
전 시	관리 및 보관책임관	관리 및 보관책임관

- 3. 안전지출 및 파기 절차와 장소
 - 1) 화재 비상시에는 문서낭에 넣어 시건 장치하여 도보로 이동, 인접 ○○경찰관서에 위탁 보관한다.
 - 2) 천재지변 및 폭동 사태시에는 문서낭에 넣어 대기 차량편을 이용, 지구보안부대에 위탁 보관한다.
 - 3) 전시에는 계약서를 제외하고 비밀문서는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며, 보관중인 비밀 문서는 인접 군부대에 위탁 보관시켰다가 명에 의거 처리한다.
- 4. 보안담당관은 군부대 및 경찰관서에 위탁 보관 확인증을 인수하여 지구보안부대에 보고한다.

제 3 장 인 원 보 안

제18조【신원조사대상】

보안업무는 취급하는 직원의 신원조사대상은 아래와 같다.

- 1. 비밀취급인가 예정자
- 2. 약호관리 정·부책임자
- 3. 해외지사 근무자
- 4.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

제19조【비밀취급인가 대상자】

아래에 열거하는 임직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.

- 1. 사장 및 비밀업무와 관련되는 임원
- 2. 보안담당관, 분임보안담당관, 보관책임자(정·부)
- 3. 문서수발 담당부장, 과장 및 실무자
- 4. 비밀문건 직접 취급 해당 직원
- 5. 기타 비밀업무를 취급해야 할 자

제20조【신원조사 요청】

- 1. 신원조사 요청시에는 정부관서의 요청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한다.
- 2. 신원조사 대상자는 필요로 하는 시기의 1개월 전에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제21조【인원보안을 위한 보안대책】

- 1. 방문자에게는 필히 군사비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 회사 내에서 시청한 비밀사항을 누설시는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됨을 설명하고 필기, 사진촬영, 녹음 등 일체의행위를 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.
- 2. 사전 계획된 안내계획에 의하여 안내요원으로 하여금 안내케 하고 방문자 임의 행동을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.
- 3. 방산수출업체의 현황 설명시는 일반사항에 국한하여야 하며, 구체적인 수출계약 수출 현황 등 비밀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.
- 4. 비밀을 비인가자에게 열람 및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5. 방문자는 회사의 중요한 시설, 기계장치 및 제조공정 등에 대하여 필기, 사진촬영, 녹음 및 녹화를 할 수 없다.

제 4 장 시 설 보 안

제22조 【보호구역의 설정】

- 1. 비밀의 보호와 주요 시설,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지역,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.
- 2. 당사의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으나 이후 추가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 - 1) 제한지역 : 본사 건물
 - 2) 제한구역: 사장실, 전화교환실, 텔렉스실, 특수물자부, 지역본부, 예비군 및 비상계획실, 컴퓨터실
 - 3) 통제구역 : 비밀합동보관소
- 3.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.
 - 1) 제한지역 : 보안담당관
 - 2) 제한구역
 - (1) 사장실 : 비서
 - (2) 전화교환실 및 텔렉스실 : 담당과장 또는 반장
 - (3) 기타 : 보관 책임관 또는 선임과장
 - 3) 통제구역 : 보관책임자

제23조 【보호구역의 출입통제】

- 1. 회사 내부로 침투하려는 외부 침입자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출입에 따른 통제는 다음과 같다.
 - 1) 제한지역의 통제를 본사 현관 및 각 층 중앙에 경비(안내)요원을 24시간 배치하여 출입자 감시 및 안내, 잡상인 및 무용자 출입 통제
 - 2) 제한구역의 통제는 각 구역별 사무실 정문에 경비요원을 24시간 배치하여 출입자의 신분과 용무 유무를 확인 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출입 허가시 안내
- 3) 통제구역의 통제는 보호구역 감시를 위해 배치된 경비요원에 의해 경비를 실시하며, 비밀보관책임자 "정" 부 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시설에 대한 감시 업 무수행, 보관책임자는 출입 회망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후 출입을 입회 감독하여야 하며 출입 통제사항을 기록 유지한다.
- 2.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제한 및 통제구역임을 표시하고, 출입통제 경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장실은 제외할 수 있다.

제24조 【면회절차】

비인가자 방문자는 안내실에서 면회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를 위하여 각 층의 안내실을 이용한다.

제25조【사진촬영 한계】

- 1. 회사 내에서의 사진은 단순히 인물사진이나 시설물 등의 부분적인 사진 등은 촬영 가능하다
- 2.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은 제한사항으로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3.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현상 및 인화는 보안 측정을 필한 업체 또는 비밀취급 인가업체에 작업 의뢰하고 회사관계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한다.
- 4. 회사 내의 필요한 곳에 다음과 같은 사진촬영 금지 경고판을 게시하여 주지시키도록 한다.

사진촬영 금지 경고 표시

경 고

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내에서는 사진촬영을 일체 금함

※ 경고표시 제작요령

적색: 경고, 사진촬영, 금지

흑색: 적색 이외의 글자

백색: 경고판

제 5 장 통 신 보 안

제26조 【약호 자재 제작】

회사는 국내외 통신상의 보안을 위하여 약호 자재를 제작하여 관계부서와 해외지사에 배포 사용한다.

제27조 【약호 자재 사용범위】

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통신(국내외 전화, 텔렉스)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약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
- 1. 상거래 보안을 요하는 내용
- 2. 국내·국외 주요 인사들의 동향(초청, 방문, 인사보직, 행사 참석 등)
- 3. 군수품 수출입 내용(품명, 수량, 국가명 등)
- 4. 해외건설정책, 군사시설, 중요 시설의 공사수주 내용(건설정책방향, 공사내용 및 규모, 수주금액 등)
- 5. 공산권과의 교역사항(국명, 품명, 수량 등)
- 6.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(주요 기술협조, 군수물자 조달 등)
- 7. 해외에서 취득된 주요 정보의 본국 보고(국내외 동향에 관한 내용, 비공개된 회의 내용, 주요 건설 첩보내용 등)
- 8. 주요 물자의 내용, 수송수단 등 제반사항(원유 도입, 중요 기자재 수송내용 등)
- 9. 국내 경쟁업체 상호간의 비방, 모략 내용
- 10. 취업자 소요 및 방법 내용
- 11. 기타 누설되면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

제28조 【약호자재 관리】

1. 약호 사용부서는 "정"(과장급 이상)과 "부"(과장, 대리, 사원) 관리책임자를 임명하

- 여 보관 관리하고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 분실을 방지해야 한다.
- 2. 약호 자재의 변경 주기는 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지침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
- 3. 자재는 현재용과 미래용을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미래용은 별도 봉인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.
- 4. 약호 자재가 필요한 부서는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5.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약호 자재를 더 이상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사장 책임하에 파기 조치한다.
- 6. 약호 자재를 분실하였거나 오인 소각 또는 소실하였을 때는 12시간내에 발행처로 통보해야 한다.

제29조 【텔렉스. 전송 보안통제】

- 1. 텔렉스와 전송이 부서의 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관리책임자 정, 부를 임명한다.
- 2. 발송시 발송 신청양식에 의거 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보안통제를 얻은 후 발송해야 한다.
- 3. 관리책임자는 수·발신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고, 주 1회 점검 및 월 1회 부서장 및 분임보안 담당관의 확인을 얻어야 함.

제30조【텔렉스 운용】

- 1. 국내전문 : III급 이하와 비밀은 음어화하여 발송하며 전문은 발송하지 못한다.
- 2. 국외전문 : 비밀 및 대외비는 반드시 문서수발계통을 이용하고 긴급한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발송한다.

제31조【전송 운용】

- 1.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국가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는 단순공개된 자료는 발송할 수 있다.
- 2. 비밀, 대외비 등 중요 내용 및 공문은 발송하지 못한다.

제32조 【국제전화 보안통제】

- 1. 분임보안담당관 및 부서장은 국제전화 사용 가능한 전화를 1대 지정하고 사용할 때 신청서에 의거 사전통제한다.
- 2. 대외비 이상 Ⅲ급비는 반드시 음어 및 약호자재를 사용한다.
- 3. 별도의 국제통화 일지를 비치 기록 유지한다.

제 6 장 보 안 교 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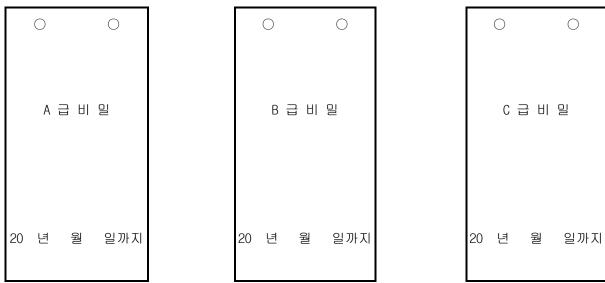
제33조【보안교육】

- 1. 보안업무의 향상과 비밀의 누설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.
- 2. 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 계획의 수립과 필요한 교안을 준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- 3. 보안교육의 시기는 아래와 같다.
 - 1) 고용 계약시(신규 채용 종업원)
 - 2) 정관이나 사규 교육시
 - 3) 비밀 군수품의 계약으로 최초 작업시와 작업 완료시 또는 수발, 수송시
 - 4) 비밀취급 인가시, 해제시

- 5) 시설이전 확장, 임무 변경시
- 6) 해외 출장시
- 7) 휴직, 퇴직, 장기 출장시
- 8) 방문 견학자가 있을 때(필요한 부분만)
- 9) 보관상 필요할 때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
- 4. 보안교육에 대한 책임은 보안담당관에 있고 전종업원은 교육을 받을 의무와 책임이 있다.
- 5. 종업원에게 대한 보안교육은 정기교육과 기회교육으로 구분하며, 정기교육은 기초적 이고 원칙적인 것으로서 선정된 강사에 의하되, 기회교육은 각 부서장 및 보안담당관 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정신보안교육을 실시한다.
- 6. 보안교육은 실무자와 일반 종업원으로 구분하며 실무자는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위주로 하고 일반 종업원은 정신교육에 대해 교육한다.
- 7. 보안교육실적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또는 교육일지에 기록 유지한다.
 - 1) 일시 및 장소
 - 2) 강 사
 - 3) 교육참가 인원
 - 4) 교육내용
 - 5) 교육장면 사진

제34조【기업보안】

- 1. 기업보안이라 함은 기업 경영상 수반되는 일상행위인 수출입, 합작, 기술도입, 연구개발, 통관, 기자재 구매, 수송, 하청, 회계감사, 자금조달 등 기업 외부와 관련된 업무를 통하여 기업 자체의 비밀보호 지속을 위한 대책을 말한다.
- 2. 기업 비밀이라 함은 회사 자체 비밀을 말하며 그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A급, B급, C급으로 분류한다.
 - 1) A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회사 자체 비밀을 말한다.
 - 2) B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회사 사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회사 자체 비밀을 말한다.
 - 3) C급 비밀은 직무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누설 방지를 요하는 사항으로 누설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개인신상,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A, B급비밀을 제외한 회사 자체 비밀을 말한다.
- 3. 기업비밀의 분류는 군사비밀 취급인가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업무 관계자에 한하여 분류권을 가지며, 비밀은 그 인지도가 많을수록 누설도가 높아지므로 해당 업무 관련자외에는 열람 및 결재할 수 없다.
- 4. 기업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종업원은 그 비밀을 분류할 책임이 있다.
- 5. 기업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A·B·C급 비밀로 분류하여야 하며, 타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.
- 6. 기업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, 과다 또는 과소 분류하는 일이 없도록 분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.
- 7. 기업비밀의 보호는 비밀의 존재가 뚜렷해졌거나, 중단되어 더 이상 보호가치가 없을 때 일반문서 또는 등급 저하 등 재분류조치를 하여야 하며, 재분류 예고문에 의한 파기는 정한 바와 같다.



- 8. 부서별로 중요 업무 취급자(과장, 차장, 부장급)를 선정 분야별로 보관책임관 "정", " 부"를 임명하여 비밀문서를 관리토록 한다. 자료실, 도면실에는 실무자를 임명, 비밀 관리기록부, 대출부 등의 장부와 열쇠를 관리토록 한다.
- 9. 기업기밀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 않고 별도로 자물쇠 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책임관이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, 비밀 합동보관소에 보관할 때에는 별도함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10. 기획, 인사, 생산 등의 중요도에 따라 부서별, 공정별, 품목별로 구분하여 칸막이 등으로 차단토록 조치하여 관계취급자 이외 인지자 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.
- 11. 연구개발자료, 정책반영 건의서, 역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바인다에 합철, 비밀로 분류 보존 관리한다.
- 12. 복제, 복사시는 지출시와 동일하게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복제, 복사를 한다.
- 13. 복제, 복사를 승인할 때는 지출 후의 보안대책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
제 7 장 보안사고 및 감사 등

제35조 【보안사고의 보고】

보안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 및 보안사고를 범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
- 1. 사고자의 인적사항
- 2. 사고일시 및 장소
- 3. 사고내용(육하원칙에 의한다)

제36조 【보안 점검】

- 1. 보안담당관은 회사 전체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운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키 위해 자체 보안점검반을 편성 보안점검을 연 1회 실시한다.
- 2. 보안담당관은 회사 전체의 보안의식 고취 및 보안관리 향상을 위해 매분기말 분야별 분임업무 분석을 실시한다.

제37조【기 타】

이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정부 관련 법규 및 관계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제 1 조【 시행일 】

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서식 제1호】비밀분류지침

【별지서식 제1호】

비밀분류지침

항목 제	TII	세 부 사 항	분 류 등 급			
	제 목		П	111	대외비	비고
1	계획 및 운영	 연 방산수출사업 계획서 방산품 수출계획 및 수출현황 		0		1. 사업계획서상 수출국가 품명수량 등이 명기될 때에 한해 비밀로 처리
2	수출상담	1. 수출상담관계(우방국) 2. 수출상담관계(공산권)	0	0		
3	수출실무	1. 수출추천신청서 2. 수출허가신청서 3. 수출통관의뢰 서류 4. 계약서(수입국비밀 요청시) 5. L/C(주요 내용 명기시) 6. INVOICE, P/LIST 7. B/L 8. 면 장 9. 부보의뢰서 10. 보험증서		0 0 0 0 0 0	0	1. 계약서는 수입국 비밀 요청시 2. 기타 수출 관련 서류는 서류상 품목, 수량, 수입국 등 내용이 기재되면 비밀로 분류